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배포일시	22017. 4. 10(월) 총 3매(본문2)	
담당 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 자	• 과장 김철홍, 사무관 김종욱 • ☎ (044)201-4504, 4580	
보 도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0(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배경) 국토교통부는 할머니, 장애를 가진 이모 등과 함께 고품팡이가 피고 난방도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윤이(가명)’ 소식을 접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윤이’ 가족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지만, 가족들 모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원시기를 놓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윤이’ 가족과 같이,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 ‘냉골에 지친 5살 가윤이’ (서울신문, 1.24)

-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 11.~5. 1., 20일간) 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 이와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044-201-4580, 4511, 팩스 044-201-555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중욱 사무관(☎ 044-201-45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

□ 사업내용

-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주택[1인 거주시 50㎡(장애인 등 60㎡) 이하]
- (재원분담) 지원한도액 기준, 용자 95%, 입주자 5% 분담
 - * 가구당 지원한도액 : 수도권 85백만원, 광역시 65백만원, 기타지역 55백만원
- (입주대상자)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시·군·구 등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 통보

-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평균소득 70%이하)
- ◆ 2순위 : 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장애인(평균소득 100%이하)

- (임대조건) 수도권 기준 보증금 425만원, 월임대료 13만원 수준
- (임대기간) 최초 2년, 재계약시 2년씩 9회 연장 가능

□ '17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공급계획

계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서울	인천	경기													
22,900	13,554	5,385	1,878	6,291	1,358	1,418	922	784	294	402	461	651	885	387	606	1,148	30

*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 전세임대 제외